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 89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2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

2. 주요내용

- 목적 정의 등 총칙(안 제1조 ~제2조)
- 주민자치회의 설치, 기능 및 정원 (안 제3조~제5조)
- 주민자치회의 위원 (안 제3조~제12조)
 - 위원추천관리위원회, 위원의 자격, 위촉, 위원의 임기, 대우, 의무, 위촉 해제
- 주민자치회의 운영 (안 제13조~제12조)
 - 운영원칙, 주민자치회의 장, 감사, 간사, 분과위원회, 회의, 주민총회
- 자치계획 (안 제20조~제21조)
 -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, 자치계획의 구성

-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(안 제22조~제23조)
 - 지방자치단체의 지원,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
- 보칙 (안 제24조~제26조)
 - 감독, 보험, 시행규칙 등

3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동 정부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, 서울 중구청), 문의전화 : 3396-4563, FAX: 3396-8612, 전자우편 : int111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-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첨부 :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